

행정구역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요청자료

(진천군 문백면 도하리 일부 → 청원군 오창면 편입)

□ 관련 법 규

○ 지방자치법 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)

- 제 1 항 :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지·분할할 때에는 법률로써 정하되, 시군 및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 2 항 : 제1항의 규정의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폐지·분할하거나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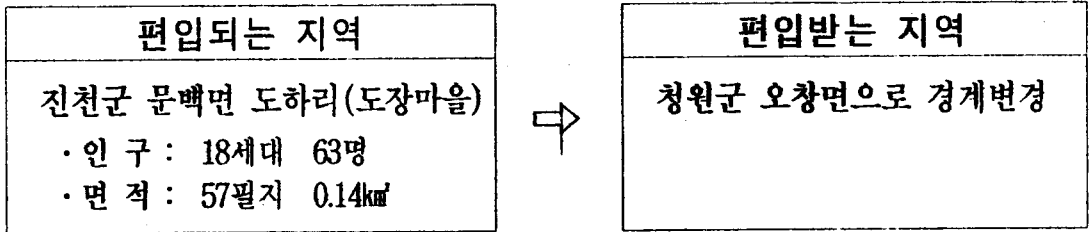
○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조(관계 지방의회)

동법 제4조 제2항의 “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”라 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말한다.

□ 요청사유 및 들고자 하는 의견

-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달라 주민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해당지역에 대해 관계 자치단체 및 의회의견을 들어 군간 행정구역경계조정 기본계획을 수립, 내무부에 건의코자 하는 것이며
- 들고자 하는 내용은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 일부(도장마을)의 청원군 오창면 편입에 대한 충청북도의회 의견입니다.

□ 행정구역 경계조정의 필요성



-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 도장마을은 경계활동 및 학구 등 주민 생활권이 청원군 오창면으로 군청 및 면사무소 등 관할 행정기관 이용에도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그동안 수차례 민원이 제기되었고
- '95. 11. 30 실시한 주민의견 조사결과 대다수 주민들이 청원군 오창면으로의 경계조정을 원하고 있으며, 해당 자치단체 및 의회에서 타당성을 인정 찬성의견을 제출하였음
- ※ 주민의견조사결과 : 총18세대중 찬성 17세대(94.4%), 반대 1세대(5.6%)

□ 그동안의 추진경위

- 주민진정건의
 - '95. 4. 7 강원삼외 17명 관계기관에 진정 (내무부, 충청북도)
 - '95. 7. 20 김하영외 17명 관계기관 진정건의 (충청북도, 진천군)
- 주민의견조사('95.11.30) : 총 18세대중 17세대 찬성(94.4%)
- 대상지역 실태조사서 제출 : 진천군('96.1.5), 청원군('96.4.)
 - 해당 군의회 의견수렴 및 자치단체장 종합의견서 포함
- ※ 충청북도의회의 의견을 들어 행정구역 경계조정 추진여부를 결정, 내무부에 건의할 계획임

□ 자치단체 의견

<충청북도>

- 당해 지역은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경제활동 및 행정 기관이용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
- 그동안 수차에 걸쳐 주민진정 및 건의 등 민원이 제기 되었고, 주민의견 조사결과 대다수 주민들이 행정구역조정을 원하고 있으며
- 관련 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에서도 군간 경계조정의 타당성을 인정 찬성의견을 제출한 바 있어, 행정구역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

<진천군> — 편입되는 지역

- 진천군의회 의견 : 당해지역 주민들의 주생활권이 청원군 오창면으로 행정구역과 달라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주민생활 불편해소 차원에서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타당함
- 진천군수 종합의견 : 대다수 주민들이 행정구역조정을 원하고 있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청원군 오창면으로 경계를 조정함이 타당함

<청원군> — 편입받는 지역

- 청원군의회 의견 : 지역주민들이 청원군 오창면으로의 편입을 원하고 있으며, 지역발전과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도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타당함
- 청원군수 종합의견 : 지역발전과 행정의 합리적 운영 및 주민생활 불편해소 차원에서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필요함